

**부천시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)
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안 심사보고**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년 6월 30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7월 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20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(2005년 7월 12일)
상정 · 의결

2. 제안 설명요지

(제안 설명자 : 도시과장 오 응 완)

제안사유

- 소사, 수주대공원 계획지가 위치한 주변 지역은 단독, 다가구 및 연립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중, 상동 신가지에 비하여 생활환경이 낙후된 지역으로,
-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건전 문화공간의 확충 일환으로 공원을 지정·조성함으로써, 동 지역 주민들의 여가·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,
- 당해 시설은 '02년 10월 도시계획시설결정된 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 후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하였으나 2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관리계획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었고,
- 소사대공원의 경우 관리계획이 도시계획결정 내용과 상이하게 승인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입안하여야 하는 상황임.

주요골자

- 당해 근린공원 2개소는 2002년 10월 도시계획시설결정 되었으나 개

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관리계획이 수립된 후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하였으나 2년이 경과하도록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아 국토계획법 제33조에의거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,

- 소사대공원의 경우 당초 결정된 내용대로 승인되지 않고 환경등급 2등급지를 제척하고 결정하도록 승인됨에 따라 재입안이 불가피한 실정이며, 수주공원의 경우 금년 하반기에 관리계획수립을 요청할 계획이므로 다시 입안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함.

□ 관련근거

- 『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라목』

3.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○ 소사대공원 조성부지는 시흥시와 중복되고 있고 이에대한 해결방법은 없는지 ?	○ 소사제2배수지 일부분으로써, 토지 소유주와 부천시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으며, 소송 계류중이었으나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여 중단된 상태임.
○ 수주대공원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건설교통부에서 승인 되지 않은 사유는 ?	○ 2002년 10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시설로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후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하였으나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건설교통부의 중요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관리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어 재입안하여야 하는 실정임.
○ 수주대공원내에 수주 변영로 선생의 동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?	○ 수주 변영로 선생 마당을 조성하고 동상은 후손에게 남기고 기억할 수 있게끔 이전조치 할 것임.
○ 공원 이름을 제정하는 절차는 ?	○ 지명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받으며 향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할 것임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찬성의견 채택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8. 붙임서류 : 의견서 1부

부천시 도시관리계획(근린공원)

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

의안번호	제408호	안건명	부천시 도시관리계획(근린공원)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안
제 출 자	부천시장	의 결 년월일	제120회 부천시의회 (제1차정례회) 제3차 본회의 (2005. 7. 15)

부천시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)

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

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산53번지 일원의 소사대공원(38,330m²)과 오정구 고강동 271번지 일원의 수주 대공원(36,280m²)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(안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.

- 소사대공원, 수주대공원의 계획지가 위치한 주변은 단독, 다가구 및 연립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중·상등 신시가지에 비하여 생활환경이 낙후된 지역으로
- 구도시와 신도시간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과 건전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므로 소사, 수주대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타당함.

2005. 7. 15

부 천 시 의 회 의 장

부천시 도시관리계획(근린공원) 결정안에 대한 의견안

의안 번호	제408호
의결 년월일	2005. 7. 15 (제120회)

제출년월일: 2005. 6. 30.

제출자: 부천시장

□ 제안사유

- 소사, 수주대공원 계획지가 위치한 주변 지역은 단독, 다가구 및 연립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중, 상동 신가지에 비하여 생활환경이 낙후된 지역으로,
-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건전 문화공간의 확충 일환으로 공원을 지정·조성함으로써, 동 지역 주민들의 여가·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,
- 당해 시설은 '02년 10월 도시계획시설결정된 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 후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하였으나 2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관리계획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었고,
- 소사대공원의 경우 관리계획이 도시계획결정 내용과 상이하게 승인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입안하여야 하는 상황임.

□ 주요내용

- 당해 근린공원 2개소는 2002년 10월 도시계획시설결정 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관리계획이 수립된 후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하였으나 2년이 경과하도록 관리계획이 승인되지

않아 국토계획법 제33조에 의거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,

- 소사대공원의 경우 당초 결정된 내용대로 승인되지 않고 환경등급 2 등급지를 제척하고 결정하도록 승인됨에 따라 재입안이 불가피한 실정이며, 수주공원의 경우 금년하반기에 관리계획수립을 요청할 계획이므로 다시 입안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함.

□ 관련근거

- 『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라목』

부천시 도시관리계획(근린공원)결정

1. 소사대공원

○ 근린공원입안조서

공원명	위 치	면적(m ²)	비 고
소사대공원m	소사구 소사본동 산53번지 일원	38,330m	

○ 토지이용계획(안)

구 분	시 설 내 용	시 설 면 적(m ²)		비 고
		부지면적	건축연면적	
총 계		38,330	4,000	
도로 및 광장	B = 2.0 ~8.0m, L = 1,550.2m 광장 N = 1 개소	4,649	-	
조 경 시 설	사각정자, 막구조파고라, 화훼류원 과학상징조형물	969	-	
휴 양 시 설	등의자, 평의자, 휴게공간(1), 휴게공간(2), 야유회장	1,164	-	
유 희 시 설	계류, 바닥분수	123	-	
교 양 시 설	도서관, 천체학습장1,2, 야외전시장	2,704	4,000	
편 익 시 설	시계탑, 음수대	-	-	
관 리 시 설	주차장, 안내판	1,283	-	
녹지 및 기타	녹 지	27,438	-	

○ 추정 소요사업비(백만원)

구분	총사업비	시설비	토지 매입비	용역비	G/B훼손 부담금	비 고
계	11,650	1,500	9,500	80	570	

○ 재원조달계획(백만원)

재원	총사업비	2005	2006	2007	2008	비 고
계	11,650	4,900	5,250	1,500		
국 비	1,138			1,138		
도 비	569		207	362		
시 비	9,943	4,900	5,043			

2. 수주공원

○ 근린공원입안조서

공원명	위 치	면적(m ²)	비 고
수주공원	오정구 고강동 271번지 일원	36,280	

○ 토지이용계획(안)

구 분	면 적(㎡)	구성비(%)	시 설 내 용
합 계	36,280.0	100.0	
도 로 및 광 장	5,971.0	16.5	도로, 광장2개소
조 경 시 설	337.0	0.9	사각정자, 문화상징조형물, 화훼류원, 바닥분수, 화분대
휴 양 시 설	1,012.0	2.8	등의자, 평의자, 휴게마당, 변영로기념마당, 모임마당, 약속마당
운 동 시 설	1,128.0	3.1	농구장
교 양 시 설	3,887.0	10.7	도서관, 문화행사장
관 리 시 설	1,420.0	3.9	관리사무소, 주차장, 안내판
녹 지 및 기 타	22,525.0	62.1	녹지

○ 추정 소요사업비(백만원)

구분	총사업비	시설비	토지 매입비	용역비	G/B훼손 부담금	비 고
계	8,150	1,500	6,000	50	600	

○ 재원조달계획(백만원)

재원	총사업비	2005	2006	2007	2008	비 고
계	8,150	30	2,300	4,320	1,500	
국 비	1,000				1,000	
도 비	1,000			500	500	
시 비	6,150	30	2,300	3,820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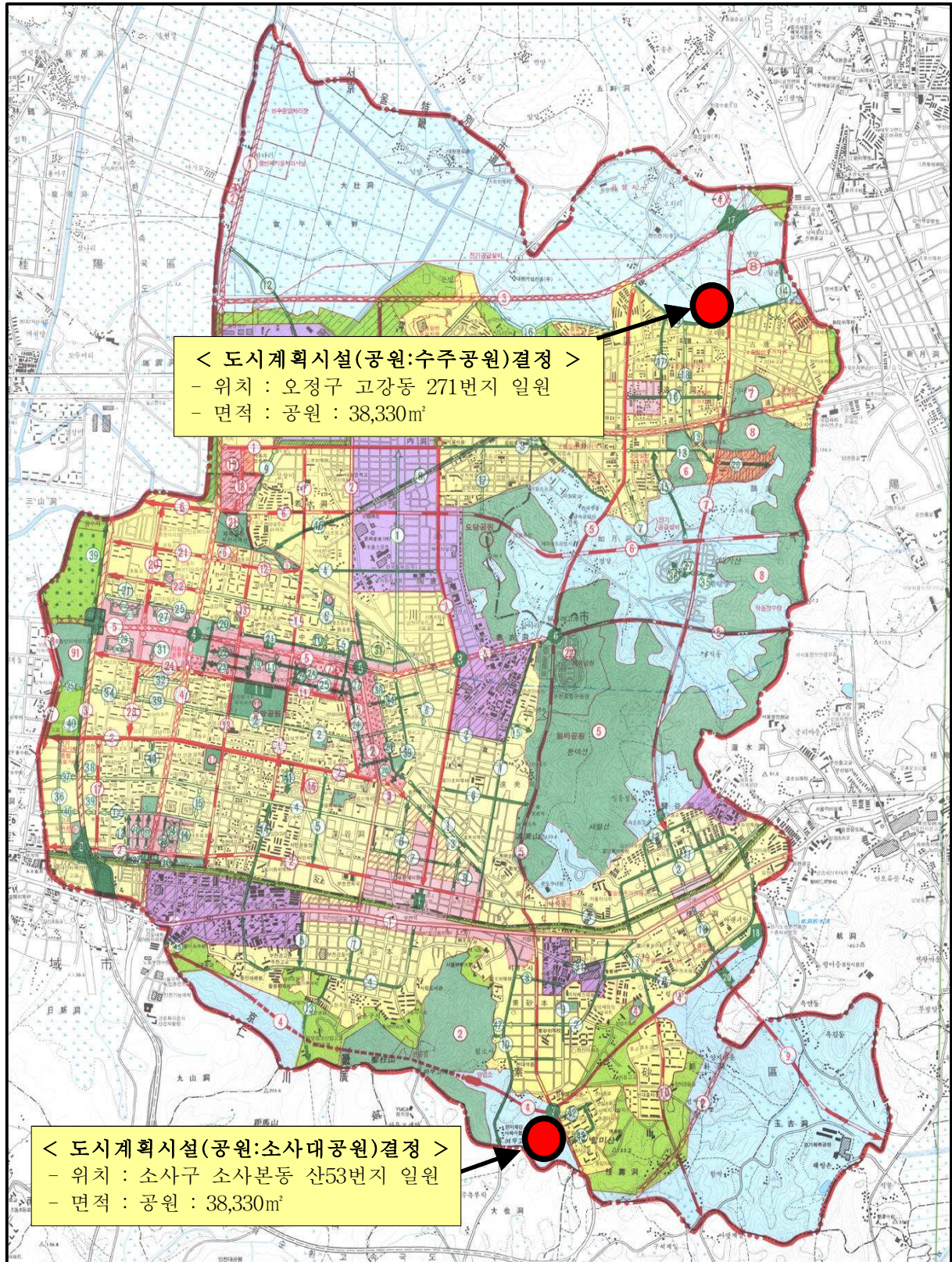
□ 참고사항

- 시설결정권자 : 경기도지사
- 당초 의회의견청취결과 : 2002. 6. 21 원안가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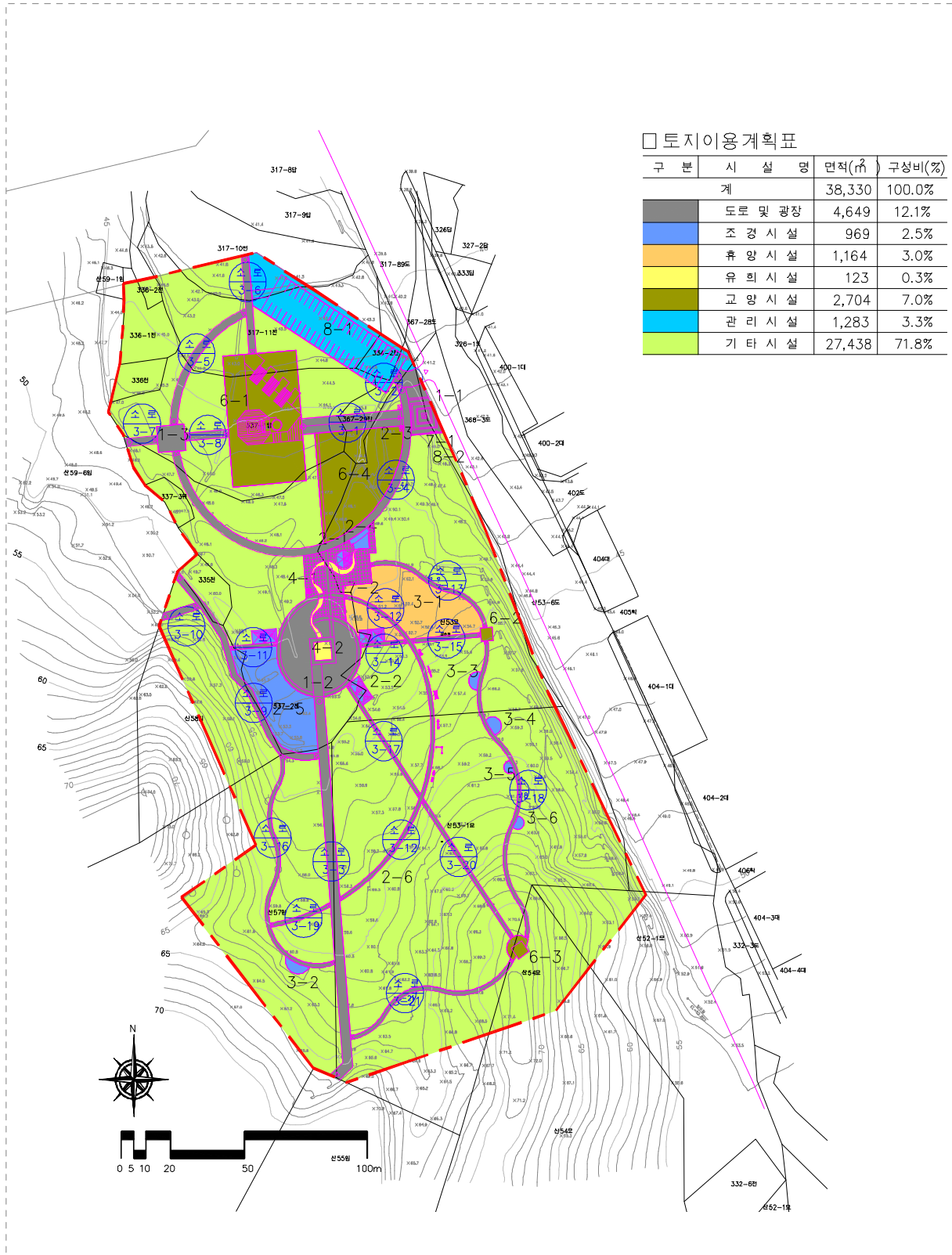
□ 기대효과

-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의 제공
- 공원녹지공간의 확충으로 도시기반시설의 확보

□ 공원위치도



□ 공원조성계획도(소사대공원)



□ 토지이용계획표

구분	시설명	면적(㎡)	구성비(%)
계		38,330	100.0%
	도로 및 광장	4,649	12.1%
	조경 시설	969	2.5%
	휴양 시설	1,164	3.0%
	유희 시설	123	0.3%
	교양 시설	2,704	7.0%
	관리 시설	1,283	3.3%
	기타 시설	27,438	71.8%

